

KERI Insight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wookh@keri.org)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제도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정확한 분석결과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분석해 올바른 정책수립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부담은 총 12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변화분인 1,754억 원,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보충 비용 12조 1천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

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 6천억 원으로 총 비용인 12조 3천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경제 특히, 제조업 경쟁력과 영세 사업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점진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단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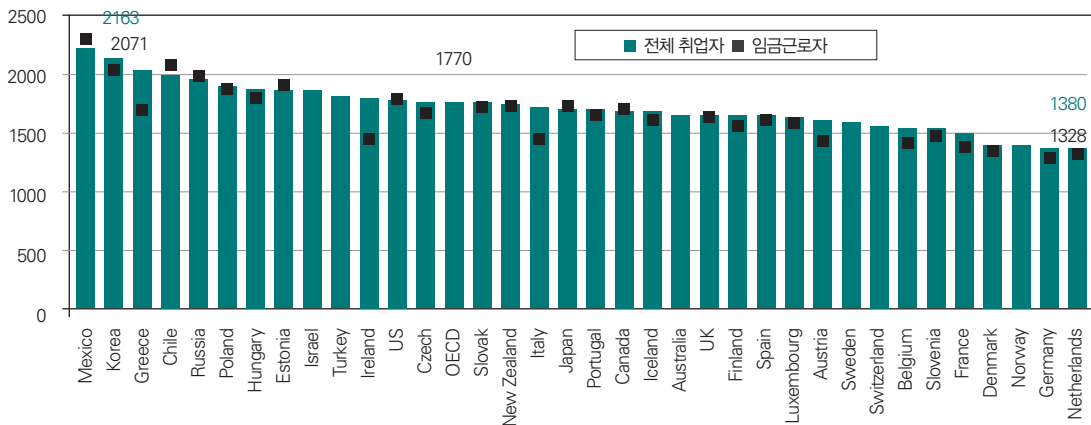
1. 도입

- 세계 최고 수준인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합의 도출은 어려운 상황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071시간으로 멕시코(2,328시간) 및 칠레(2,085시간)에 이어 OECD 3위 수준
 - 이는 네덜란드(1,328시간)에 비해 무려 743시간(약 4.3개월) 긴 상황
 -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37시간) 다음으로 긴 상황
 - 이는 OECD 평균 1,770시간에 비해 393시간(약 2.3개월) 길고 네덜란드(1,380시간)에 비해서는 무려 806시간(약 4.6개월) 긴 것
-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위를 중심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 중단된 상황

- 노사정위는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2010.6.8)하였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상황
-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 1그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3개 현안(통상임금제도 개선, 실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을 논의하였으나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
-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비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노사정이 2014년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경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함.
 - 노사정은 공동체적 시각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당의성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경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함.

〈그림 1〉 OECD 국가 연간 실 근로시간



자료: OECD
 주: 한국 전체 취업자 자료는 2012년 기준

-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금전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경제적 여파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인건비 산정 변화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추가적 고용을 해야만 할 경우 발생하는 노동비용 상승
-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비용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의 금전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정한 방식과는 차별성을 두어 보다 정확한 비용 추정을 시도

- 두 단체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할 경우 일시적 비용 증가분이 약 7조 5,9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당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 이상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음.
- 또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근로시간을 추가 고용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 및 각종 법정·법정의 복리비용 및 채용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음.

□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변화, 추가적 고용으로 인한 임금 및 각종 직·간접 노동비용을 추정

- 본 연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되면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추정

- 기존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을 고려했고 중복할증으로 인해 임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

• 현재의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시간을 추가 고용을 통해 해결한다고 가정¹⁾하고 추가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

• 또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추가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정·법정의 복리비용 및 채용 관련 비용도 추정

- 따라서 본 연구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및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다 정확히 추정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

□ 2010년 이후 노사정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합의(2010.6.8.)를 통해 구체화 됨.

- 그 외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공익위원 합의문('12.1.31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2013.7.17.) 등을 통해 기본 원칙에 대한 논의 진행

-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

- 현재 2,000시간을 넘는 연간 실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
- 또한,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근로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생산량 감소, 노동비용 증대로 인한 고용 위축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

1) 정부와 노동계 모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노동시간만큼 추가 고용이 일어난다는 가정과 동일

□ 최근 논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 시행 시기, 추가 연장근로의 허용 여부 및 휴일연장근로의 중복할증 여부에 대해 노사정은 의견 대립을 보이는 상황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대해 노사정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합의

-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주 40시간인 기준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최대 주 12시간)을 더해 최대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됨.
- 노사정 모두 원칙에는 합의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 추가 연장근로시간의 필요성을 강조
- 노동계는 전제조건 없이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

-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

- 노동계는 개정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6단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 정부는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황

- 추가연장근로 허용에 있어서도 노사정은 다른 의견을 견지

- 노동계는 추가연장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 경영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합의 시 연중 1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 정부도 추가연장근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외적 허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노사합의 시 1주 8시간, 1월 24시간, 1년 208시간의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공익위원도 추가연장근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노사합의, 주/월/년 단위 총량규제)을 충족할 경우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 기간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휴일연장근로의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다른 의견

- 노동계는 즉각적으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의 유인을 낮추기 위해 할증률을 ILO 권장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
- 정부는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할증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없음.

〈표 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입장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기본취지	찬성	추가연장근로를 전제조건으로 찬성	찬성
	시행방법	개정 즉시 시행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²⁾ - 6단계로 나누어 시행 - 시행 시까지 주 68시간 유지	시행여건 고려, 단계적 시행
	추가연장근로	반대	- 추가연장근로 허용(연중 1주 8시간) - 추가연장조건: 노사합의 시	- 예외적 허용 - 추가연장조건: 노사합의 - 주/월/년 단위 총량규제 * 1주: 8시간, 1월: 24시간, 1년: 208시간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중복할증 인정	중복할증 불인정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 근로의 중복할증 인정
근로시간의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단위기간 확대 (2주→1개월, 3개월→1년)
	재량근로 시간제	업무확대 및 요건완화 반대	- 대상 업무확대 - 개별근로자 동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대상 업무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반대	-	도입 찬성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제도 폐지 (즉시 시행)	- 선 실태파악 필요 - 산업파급영향 고려 축소하되, 규모별 로 단계적 시행	- 특례업종 축소(단계적 시행) (26개 업종, 328만 명→10개 업 종, 147만)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 또는 상한 설정	현행 유지	관리·감독자 기준 명확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현행 유지	신중 검토
	white collar exemption	도입 반대	도입 찬성	신중 검토
휴식과 휴가제도	최소연속 휴식시간 보장	1일, 1주 최소연속 휴식시간 보장	도입 반대	-
	연속적 휴가 사용	제도 도입	반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현행 유지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및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	-
연장근로 할증률		현행유지	할증률 축소(50%→25%)	-

자료: 노사정위원회

2) 10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전면시행: 2024년

- 그 외 근로시간 관련 다수 주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상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제 좌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 등에서 여전히 의견이 나뉘는 상황
 - 또한, white collar exemption과 같은 근로시간 적용 예외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어렵고, 휴식과 휴가 제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어려운 상황

3.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방법

□ 사용데이터 및 추정 방법

- 근로시간 단축 비용 추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와 「기업체노동비용조사(2012)」 데이터를 이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데이터는 임금근로자의 정액급여, 초과급여,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의

항목이 조사되어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시간 및 추가비용 추계에 가장 적합한 자료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통해 부족시간으로 인해 신규인원을 채용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노동비용³⁾을 산출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인한 인건비 변화분과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인원을 추가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음.
- 단축 전 연간 초과수당의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초과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의 150%를 적용하였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초과근로수당이 조사되어 있지만 해당 금액이 시간당 임금의 150%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축 전후의 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초과근로수당을 “초과근로시간×시간당 임금×150%” 식을 통해 재산출하여 추정하였음.

〈표 2〉 휴일근로 포함 여부 및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노사정 의견

접점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기준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합하여 주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원칙임을 확인함. - 다만 단기간 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p>노동계: 전제조건 없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즉시 시행</p> <p>경영계: 추가 연장근로시간 허용을 전제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찬성하고, 중복할증 불인정</p> <p>정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되,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p>

자료: 노사정위원회

3)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등의 비용, 현물지급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채용관련비용, 교육훈련비용, 기타노동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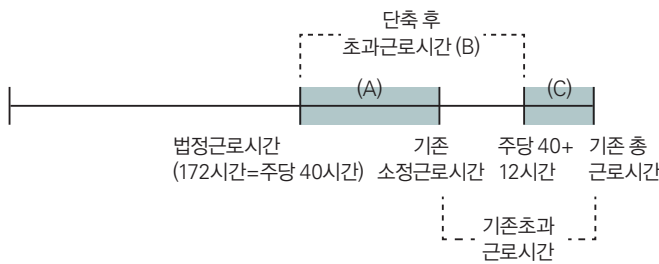
-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주당 초과근로시간 합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아래의 식을 통해 산정하였음.⁴⁾

$$\begin{aligned} \text{현재 초과수당} &= \text{시급} \times (\text{연장근로시간}_1 + \text{휴일근로시간}_1) \times 1.5 \\ \text{변경 후 초과수당} &= \text{시급} \times ((\text{연장근로시간}_2 \times 1.5) + (\text{휴일근로시간}_2 \times 2.0)) \end{aligned}$$

단, 연장근로시간₂ + 휴일근로시간₂ =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여기서 첨자 1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을 나타내고 첨자 2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를 의미함.
- 단축 시행 후 부족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A)을 초과근로시간에 합산해 새로운 초과근로시간(B)을 산출하고 단축 후 초과근로시간 합이 12시간이 넘는 경우 해당 시간들의 총합을 부족시간(C)으로 정의하였음.

〈그림 2〉 근로시간 단축 시 부족시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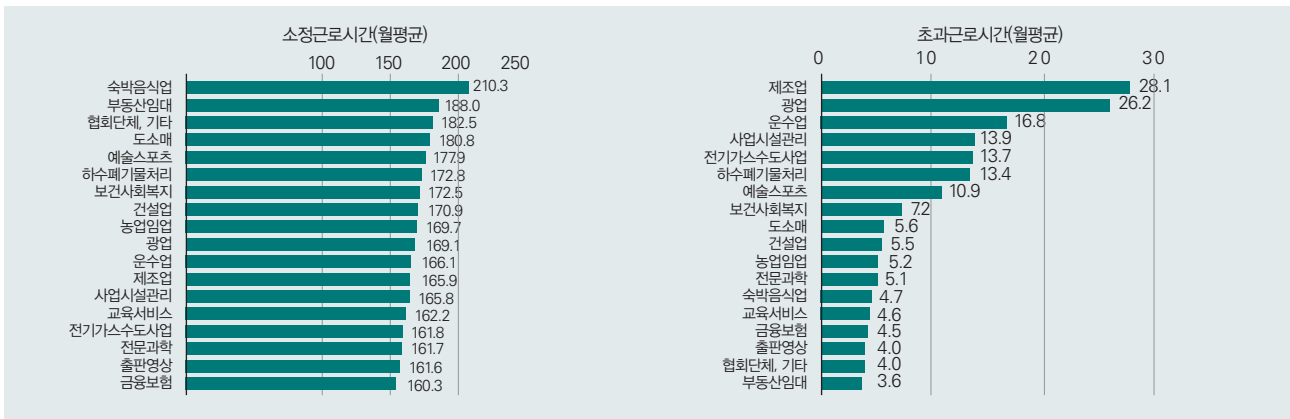
- 위의 식을 통해 산출한 부족시간의 합을 근로시간 단축 후 규모별,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눠 현재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추가인원고용을 산출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보다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근로자는 분석에서 제외, 정규직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4. 추정 결과

- 소정근로시간이 높은 산업은 대부분 초과근로시간이 적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요를 소정근로를 늘려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산업별 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는 숙박음식, 부동산임대, 협회 및 단체업종이 가장 길었으며 초과근로시간은 제조업, 광업, 운수업에서 길었음.
 - 초과근로시간의 산정과 수당지급이 용이한 제조업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은 월평균 165.9시간인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월평균 28.1시간으로 가장 많은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10.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초과근로시간은 4.7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숙박음식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요를 소정근로 연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추정 가능

4)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현재 연장과 휴일근로시간의 비중을 갑자기 변경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비율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였음.

〈그림 3〉 산업별 평균 소정 및 초과 근로시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고용노동부
 주: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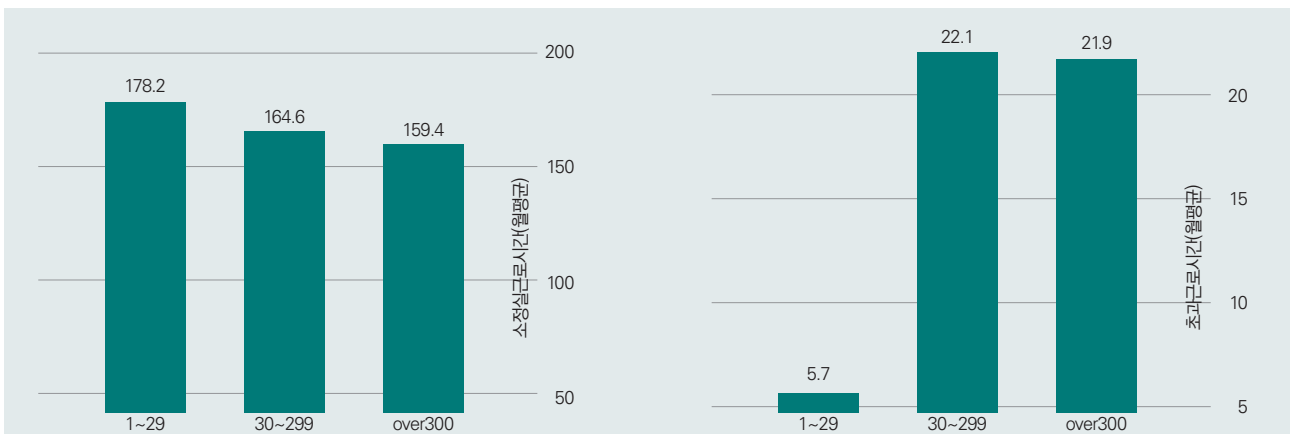
□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정근로시간은 적고 초과근로시간은 많은 형태를 보임.

- 1~29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72시간)을 넘는 월평균 178시간으로 나타나 30~299인 규모의 165시간, 300인 이상 규모의 159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길었음.
- 반면 초과근로시간의 경우, 1~29인 규모는 월평균 5.7시간으로 30~299인의 22시간, 300인 이상 22시간의 1/4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영세규모 사업장에서 부족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초과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 산업 평균 영세규모 및 대기업의 초과근로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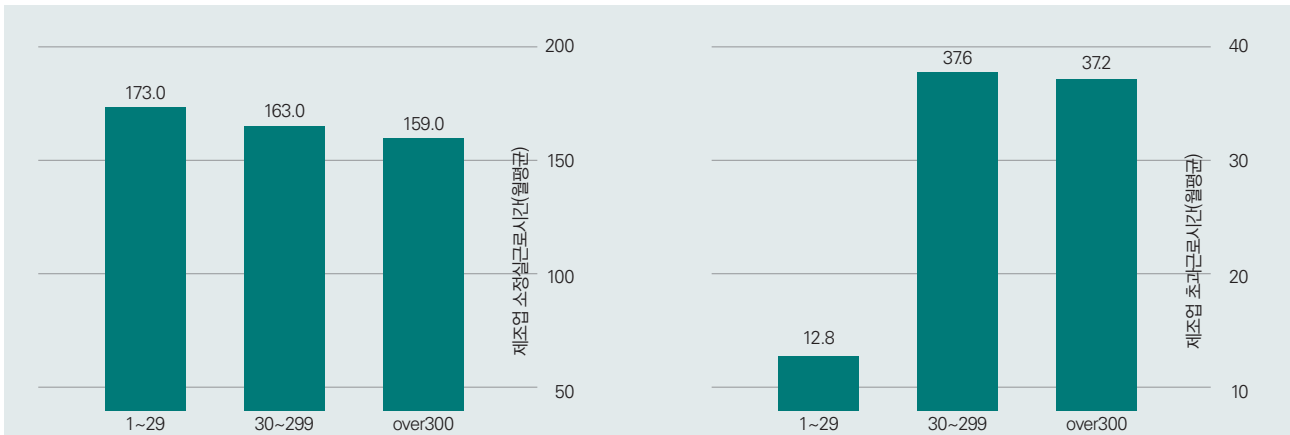
- 1~29인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2.8시간으로 30~299인 및 300인 이상 사업장과 약 25시간의 차이를 보여 전 산업에서 해당 규모의 차이인 16시간보다 크게 나타났음.
- 반면, 제조업 1~29인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173시간으로 30~299인 사업장(163시간) 및 300인 이상 사업장(159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기업규모별 평균 소정 및 초과 근로시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고용노동부
 주: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그림 5〉 제조업 기업규모별 평균 소정 및 초과 근로시간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고용노동부

주: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분석대상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이므로 제조업종에서 규모별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살펴보았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월평균 5.21시간,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총 근로시간은 30~299인 규모에서 월평균 7.49시간,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300인 이상 규모에서 6.17시간, 3.4%, 1~29인 규모에서 3.54시간, 1.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종에서 월평균 14.19시간, 6.6% 감소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근로시간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그 외 광업(10.3시간, 5.3%), 부동산·임대업(9.42시간, 4.9%), 제조업(9.36시간, 4.8%), 운수업(7.32시간, 4%) 순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됨.

〈표 3〉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총 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

	총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단축 전	단축 후		
1~29인	183.92	180.38	-3.54	-1.9
30~299	186.71	179.22	-7.49	-4.0
300인 이상	181.33	175.16	-6.17	-3.4
전체	184.37	179.16	-5.21	-2.8

〈표 4〉 산업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총 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

	총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단축 전	단축 후		
농림어업	174.89	173.1	-1.79	-1.0
광업	195.31	185.01	-10.30	-5.3
제조업	193.93	184.57	-9.36	-4.8
전기가스수도사업	175.53	173.35	-2.18	-1.2
하수폐기물처리	186.21	181.45	-4.76	-2.6
건설업	176.46	174.76	-1.70	-1.0
도소매	186.38	183.11	-3.27	-1.8
운수업	182.89	175.57	-7.32	-4.0
숙박음식업	215.01	200.82	-14.19	-6.6
출판영상	165.56	164.93	-0.63	-0.4
금융보험	164.74	164.63	-0.11	-0.1
부동산임대	191.63	182.21	-9.42	-4.9
전문과학	166.87	166.07	-0.80	-0.5
사업시설관리	179.64	175.02	-4.62	-2.6
교육서비스	166.8	166.01	-0.79	-0.5
보건사회복지	179.69	178.39	-1.30	-0.7
예술스포츠	188.8	185.14	-3.66	-1.9
협회단체,기타	186.45	183.95	-2.50	-1.3
전체	184.37	179.16	-5.21	-2.8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초과근로시간 변화는 30~299인 규모에서는 3.66시간, 16.5%,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4.95시간, 2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1~29인 규모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근로시간 단축이 1~29인 규모의 초과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유지되었던 과도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에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타 규모에 비해 긴 1~29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법정근로시간(172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인정 요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음.

• 예를 들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월평균 220시간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 소정근로시간(220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72시간)을 뺀 나머지 48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이와 같은 상황을 상정해 분석해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비중이 높은 1~29인 규모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초과근로시간이 증가

-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도 앞서 설명한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적고 초과근로가 많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만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나머지 산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총 초과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

	초과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단축 전	단축 후		
1~29인	5.7	15.95	10.25	179.8
30~299	22.14	18.48	-3.66	-16.5
300인 이상	21.91	16.96	-4.95	-22.6
전체	13.5	16.91	3.41	25.3

〈표 6〉 산업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초과근로시간 변화

(단위: 시간, %)

	초과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단축 전	단축 후		
농림어업	5.23	11.22	5.99	114.5
광업	26.19	26.96	0.77	2.9
제조업	28.06	23.14	-4.92	-17.5
전기가스수도사업	13.72	12.40	-1.32	-9.6
하수폐기물처리	13.40	17.39	3.99	29.8
건설업	5.55	11.22	5.67	102.2
도소매	5.59	17.66	12.07	215.9
운수업	16.79	18.13	1.34	8.0
숙박음식업	4.69	32.83	28.14	600.0
출판영상	4.00	4.95	0.95	23.8
금융보험	4.47	5.09	0.62	13.9
부동산임대	3.61	17.49	13.88	384.5
전문과학	5.13	5.62	0.49	9.6
사업시설관리	13.89	14.36	0.47	3.4
교육서비스	4.60	7.20	2.60	56.5
보건사회복지	7.24	14.30	7.06	97.5
예술스포츠	10.88	20.86	9.98	91.7
협회단체, 기타	3.98	18.69	14.71	369.6
전체	13.5	16.91	3.41	25.3

- 기존 근로자의 총임금 변화는 초과근로수당의 변화 및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평균 1.9% 임금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 추정됨.
- 단축 이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하던 초과근로수당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적용되면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에 200%를 지급하게 되어 임금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던 초과근로수당과 중복할증

을 고려하면 1~29인 규모 사업장 기존 근로자의 임금은 5.6%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규모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각각 0.4%, 0.9%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종에서는 임금이 감소하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숙박·음식업종에서 16.4%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나머

〈표 7〉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총임금 변화

(단위: 월, 천원, %)

	총임금		증감	증감률(%)
	단축 전	단축 후		
1~29인	2,314	2,444	130	5.6
30~299	3,156	3,142	-14	-0.4
300인 이상	4,587	4,547	-40	-0.9
전체	2,950	3,007	57	1.9

〈표 8〉 산업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총임금 변화

(단위: 월, 천원, %)

	총임금		증감	증감률(%)
	단축 전	단축 후		
농림어업	3,267	3,360	93	2.8
광업	3,281	3,349	68	2.1
제조업	3,105	3,080	-25	-0.8
전기가스수도사업	5,265	5,239	-26	-0.5
하수폐기물처리	2,632	2,707	75	2.8
건설업	2,787	2,876	89	3.2
도소매	2,554	2,705	151	5.9
운수업	2,841	2,869	28	1.0
숙박음식업	1,734	2,019	285	16.4
출판영상	3,726	3,753	27	0.7
금융보험	4,801	4,816	15	0.3
부동산임대	2,242	2,380	138	6.2
전문과학	3,687	3,706	19	0.5
사업시설관리	2,456	2,475	19	0.8
교육서비스	3,581	3,626	45	1.3
보건사회복지	2,440	2,548	108	4.4
예술스포츠	2,417	2,551	134	5.5
협회단체,기타	2,090	2,268	178	8.5
전체	2,950	3,007	57	1.9

지 산업도 초과근로 시간의 증감 수준과 연동되어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인원은 약 26만 6천 명, 추가비용은 총 12조 3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1,754억 원 증가

-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액이 소폭 감소하여 기존 근로자 임금 총액은 약 906억 원 감소

- 그러나 1~29인 사업장의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기존 근로자 추가 비용이 약 2,163억 원 발생하게 됨.
- 30~299인 사업장에서도 약 496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 6천 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
- 1~29인에서 9만 3천 명, 30~299인에서 12만 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약 5만 3천 명 인력부족이 발생

-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추가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은 연간 12조 3천억 원
 -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인력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 모두 발생
 - 추가 고용 시, 현금 및 현물급여 등 직접노동비용은 약 9조 4천억 원 발생
 - 그 외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 및 법정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은 약 2조 7천억 원 발생
 - 근로시간 변화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변화(1,754억 원)와 추가고용에 의한 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은 약 12조 3천억 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중 70%(약 8조 6천억 원)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중·소 규모의 사업장의 비용 부담 급증
 - 1~29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력충원 시 이종고를 겪게 될 전망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추가비용은 약 3조 6천억 원
 - 1~29인 영세 사업장도 이와 유사한 3조 3천억 원을 부담
 -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력충원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로 인력확보 시 이종고를 겪게 될 것으로 추정됨.
 - 전체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8조 6천억 원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집중됨으로써 중·소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
 - 1~29인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3조 3천억 원)과 30~299인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5조 3천억 원)을 합하면 전체 비용의 약 70%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의 70%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됨으로써 이들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
- 근로시간 단축의 총 비용 중 약 60%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22%는 영세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집중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영세 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됨.

〈표 9〉 규모별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부족인원 및 비용추계

(단위: 연간, 천 원, 명)

	기존근로자 임금변화분	부족인원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총 비용
1~29인	216,392,544	93,080	2,523,833,826	586,761,938	3,326,988,308
30~299	49,603,418	120,305	4,134,964,009	1,148,572,891	5,333,140,318
300인 이상	-90,591,333	52,706	2,757,136,907	997,113,829	3,663,659,403
전체	175,404,629	266,091	9,415,934,742	2,732,448,659	12,323,788,029

주: 간접노동비용은 2012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통해 산출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의 전체 비용 12조 3천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7조 4천억 원이 제조업에서 발생
 - 초과근로시간이 높았던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약 1,306억 원 감소
 - 그러나 생산량 유지를 위해 부족 인력을 채용할 경우 총 비용은 약 7조 4천억 원 증가하여 경제 전체 비용의 60%를 차지
 -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
- 근로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영세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업에도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를 초래할 전망
 -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산업은 운수업(1조 원), 도소매업(8천 9백억 원) 및 숙박음식

업(8천 2백억 원)

- 이들 산업의 총 비용은 약 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22.2%
- 상대적으로 영세 기업이 많은 운수업,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5. 요약 및 시사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는 연간 총 1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부족을 추가 고용으로 해결할 경우 연간 총 12조 3천억 원의 비용 발생

〈표 10〉 산업별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부족인원 및 비용추계

(단위: 연간, 천 원, 명)

	기존근로자 임금변화분	부족인원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총 비용
농림어업	5,617,640	189	7,127,909	1,477,127	14,222,676
광업	3,078,328	671	25,682,467	8,922,312	37,683,107
제조업	-130,596,924	144,818	5,607,451,358	1,886,053,817	7,362,908,251
전기가스 수도사업	-4,625,903	639	39,019,239	12,319,029	46,712,365
하수 폐기물처리	2,115,259	1,438	51,149,864	11,618,576	64,883,698
건설업	10,060,670	5,488	195,778,857	49,691,471	255,530,998
도소매	52,635,904	21,238	669,791,728	168,240,603	890,668,234
운수업	12,409,860	21,726	816,732,427	196,901,645	1,026,043,932
숙박음식업	58,622,911	27,525	651,200,135	109,075,646	818,898,692
출판영상	7,470,176	1,387	59,197,839	11,510,122	78,178,136
금융보험	3,235,039	271	16,128,465	4,409,092	23,772,596
부동산임대	21,709,163	9,078	246,365,618	66,401,303	334,476,084
전문과학	7,338,196	3,207	141,156,615	28,823,111	177,317,922
사업시설 관리	4,750,281	14,137	444,006,591	62,776,447	511,533,319
교육서비스	7,954,606	1,582	62,294,765	13,169,011	83,418,383
보건 사회복지	65,669,688	5,972	196,148,104	59,699,018	321,516,810
예술스포츠	20,066,524	1,586	49,777,307	12,366,379	82,210,210
협회, 단체, 기타	27,893,213	5,140	136,925,453	28,993,950	193,812,616
전체	175,404,629	266,091	9,415,934,742	2,732,448,659	12,323,788,029

주: 산업별 간접비용 산출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조사되지 않은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의 경우 산업 및 기업규모별 평균비용으로 대체하여 추정하였음.

- 기존 근로자의 임금변화 및 추가고용에 의한 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은 약 12조 3천억 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중 70%(약 8조 6천억 원)을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전망
 - 1~29인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3조 3천억 원)과 30~299인 사업장이 부담할 비용(5조 3천억 원)을 합하면 전체 비용의 약 70%
 - 열악한 근로환경,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중·소 사업장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됨.
 - 근로시간 단축의 총 비용 중 약 6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근로시간 단축의 전체 비용 12조 3천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7조 4천억 원이 제조업에서 발생
 - 영세 사업장이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업은 전체 비용의 약 22%인 2조 7천억 원을 부담
 -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산업은 운수업(1조 원), 도소매업(8천 9백억 원) 및 숙박음식업(8천 2백억 원)
-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5-9인 규모 영세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은 7.8%로 심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음
 - 본 연구의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비용에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29인 미만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격한 비용상승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삽입 및 중복할증이 시행될 경우 현재 연장근로를 휴일근로로 전환할 유인이 더욱 강화되어 생산투입 시간은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은 채 인건비 상승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비용 급증 문제에 대처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참고문헌〉

변양규·김선우(2013)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KERI Brief 2013-19,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2014),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문제와 쟁점”,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5년 5월 6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